# 시보

선	기관의 장
[ 건	
람	

# all ways INCHEON

제2012호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L	_ =	-0 E	ц ~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7호 인천	신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	
│ ○											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8호 인천										ᅫ	
$igert^{\circ}$ 정규정안 입법예고 ······	•••••	•••••	•••••	•••••	•••••		•••••	•••••	•••••	••••	23

회					
람					
		l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7호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과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22.7.5.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일제 정비함.
- 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배포 ('22.1.24.)에 따라 지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나.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3조)
- 다. 신고 상담·접수 서식 마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부패신고접수대장(별지제2호서식), 접수증(별지제3호서식), 안내문 및 협조사항(별지제4호 및 제5호서식), 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서(별지제6호서식)
- 라. 신고 조사 및 처리 결과 통보 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
- 마. 신고의 이송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바. 보호·보상제도 안내 조항 신설(안 제7조의3)
- 사.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조치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아. 상위법령 중복기재 조항 삭제
  - 불이익조치 및 처리절차 조항 삭제(안 제11조)
  - 불이익의 추정 조항 삭제
  - 신변보호조치 조항 삭제(안 제12조)
- 자.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및 조치결과 통보 조항 마련 (안 제13조제2항)
- 차. 신고자 보호 조항 신설(안 제14조)
- 카.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 제18조)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3183,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gureum8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 3. "신고자"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시에 신고한 자
-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 5. "불이익조치"라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7. "공직자"란 법 제2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적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한다.
  -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공직감찰에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는다.
- ①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 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 ⑤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 2. 감사・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 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 가 있는 사항
-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 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 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 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수 있다.
-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시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신변보호)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본다.
-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시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 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야 한다.
-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시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

는 제외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 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 다.

- 제2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 7. 5.부터 시행한다.

지 제1호서석	4]		
	신	고 상 담 처 리 부	
		담당자	담당
담자			
l·성명)			
상담일자	20	상담유형 [] 전화	[ ] 방문 [ ] 인터넷 [ ] 출
-! !!=!=!	성명	전화번호	
피상담자 (민원인)	주거	관련기관	
상담요지			
상담결과			

[별지 제2호서식]

# 부 패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22 - 00					

[별지 제3호서식]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워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5호서식]

#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 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연락처						
H -11 A -1	제목						
부패신고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있습니다. 이 ⇒ [ ] ;  2. 수사기관의 귀하의 신고 절차를 거칠 동의하시겠습	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 ] 부동의 수사과정 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위 신고?	자 본인은 인적시	h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sub>귀하</sub>					

[별지 제7호서식]	]						
	포상금	금 지급대상지	나 추천서				
♠ ঽঽৢৢয়	추천기관명						
① 추천기관	소관부서		(전화번호	<u>5</u> )			
	성 명		<del>주민등록번호</del>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주 소						
	연 락 처						
	소속						
	직업(직위)						
	[] 내	부 신고자	[	] 외부 신고	자		
	[ ] 포상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원	<u>්</u>	
			신고일사	20 년	철	일	
④ 조사결과	신고내용		결과				
	조사수사기관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 ] 외부 신고자 나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일자 20 년 월 일 과 일가 20 년 월 일 의자 3음 (기관명: 없음 (금액: 없음 급액: 없음 물」 제68조제1항에 따른			
⑤ 다른 법령 <sup>-</sup>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있음 [ ] 없음	(기관명 :			)
포상금 청구 또	는 수령사항	수령여부	[ ] 있음 [ ] 없음	(금액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 설치와 운영에 <del>1</del>	관한 법률」 저	68조제1항여	따	른 3	딘싱
금 지급대~	상자를 위와 같이 추	<sup>드</sup> 천합니다.					
		:	20 년 월	일			
	국민·	권익위원회위	<b>원장</b> 귀하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8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처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22.1.1.시행)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22.1.24.)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고의무 및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6조)

- 다. 공익신고 접수시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협조사항 안내 (안 제13조제1항, 제19조제2항)
- 라. 공익신고 대행자 범위 확대(안 제14조)
- 마.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안 제19조제3항)
- 바. 보상금·포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30조, 제31조)
- 사.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32조)

#### 3. 자치법규안: 별첨

####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3183,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gureum8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를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로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2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33조로 한다.

- 제8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공익신고센터의 설치"를 "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은" 제7조에 따른 공익제보 접수창구에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제보 접수창구"로 한다.
- 제9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중 "공익신고책임관의"를 "책임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한다.
  -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각각 "책임 관"으로 한다.
- 제12조(종전의 제9조) 제1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책임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를 "조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센터"를 "공익제보 접수창구"로 한다.
- 제13조(종전의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

- 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책임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변호사
  -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접수할 수 있다.
- 제16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각각 "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차례만 다시"를 "다시"로, "제 17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 제17조(종전의 제13조) 제목 중 "철회"를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회"을 "취소"로, "공익신고담당관"을 "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가 철회된"을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으로 한다.
- 제18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책임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각각 "책임관"으로 한다.
- 제19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시장"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시장"으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 제19조(종전의 제15조) 제3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로, "조사결과"를 "조사·수사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및 제7항의 "공익신고담당관"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 제20조(종전의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 익신고담당관"을 "책임관"으로 한다.
  -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제15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제16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을 "제1항"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종결한 사실"로 한다.
- 제22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중 "조사·처리결과"를 "처리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 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로, "7일 이내에 별지 제 9호서식"을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부터 제13조"를 "제11조부터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시장"으로 한다.
- 제24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중 "시장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신고책임관"을 "책임관"으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 제26조(종전의 제22조) 중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를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 제27조(종전의 제2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으로 한다.
  -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종전의 제24조) 제1항 중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를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 제29조(종전의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책임관"으로, "공익신고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 제30조(종전의 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7조제1항"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2년"을 "3년"로 한다.
  - ①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31조(종전의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담당관은"을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담당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를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로, "경우 법 제27조에따라"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및 자목은 제외한다.)"를 "손해"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9조) "공익신고담당관"을 "시장"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지침을 적용한다.

제3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22 - 00					

[별지 제2호서식]

#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접수창구**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접수창구**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변지 제3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선문당개 당의어구 확인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 I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O i 行工	접수일지	ŀ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앞으로 구 있습니다 ⇒ [ 2. 수사기관 귀하의 산 절차를 기 동의하시	난의 조사과정 남하의 공익신고사전 이 과정에서 귀현 기동의 [ ] 산의 수사과정 난고사건이 수사기전 시칠 수 있습니다. 겠습니까? 기동의 [ ]	하의 신분을 밝히 부동의 앞에 고발되거나 이 과정에서 귀히	거나 암시하는 경 검찰에 송치되어	것에 동의하 대 동의하	시겠습니까? 에서 수사하는		
위 신고	자 본인은 인	적사항 등 신분공	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	니다.		
				20 년	월	일		

#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신고자	주소							
	연락처							
70M7	제목							
공익신고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0 년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저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	목												
담당부	-서						담 당						
신고자 /	· 성명					피신고자성명		명					
										'			
	조사	수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0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	기관			
처 리	<i>결</i> :	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성 (대상	상자 기관)			
		조사기관			 수	-사기	 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담당	책임관		
종 결 일		20					종결	확인					
보존기간		년 (20 까지)											

[별지 제6호서식]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7호서식]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시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조 제5항) [별지 제8호서식]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테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제2012호 	<u> </u>		모	2022. 2. 18.(금요일			
[별지 제9호서스	4]			(앞쪽)			
	포싱	<b>남금 지급대상</b> :	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추천기관명						
① 추천기관 	소관부서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 포상금	연 락 처						
© 포증되 지급대상자	소 속						
11811811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ŀ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성	사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면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없음	: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신 · 구조문 대비표

혅 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 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 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 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 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를 말 한다.
-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말한다.

정 아 개

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 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 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 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라 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 하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시의 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 무워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 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 한다) 및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 찰에게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 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 야 하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 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 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1) 시

##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① 시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현행과 같음)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 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 와 조치 기준
-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

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 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 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mark>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mark> (현행과 같음) 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 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 호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제보 접수창 감사관실에서 설치하며. 각 업무 소관부서에도 공익신고업무의 효 율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 다.

##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등) 제9조(책임관의 지정등) ① 공무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익신고 책임관(이하 "공익신고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하고, 공익신 고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 신고담당관(이하 "공익신고담당관"

### ① 제8조(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

- ①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 른 공익제보 접수창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 호에 필요한 업무
- 구는 감사관실에서 설치하며, 각 업무 소관부서에도 공익신고업무 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 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이라 한다)이 되며, 공익신고의 상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담·접수·처리, 보호·보상제도 안내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 제10조(공익신고 상담) (현행과 같 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 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 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 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 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 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 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책 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 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 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 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

음)

- 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 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 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 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 여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 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 우에는 공익제보 접수창구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 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 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 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 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 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 고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 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 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 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 하다

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 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 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 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 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 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 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 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하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 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 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 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 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 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 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 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③ (삭제)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 창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② <u>공익신고담당관</u>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u>한 차례만 다시</u>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u>제1</u> 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 할 수 있다.
- ③ <u>공익신고담당관</u>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 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u>제17조</u>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 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③ <u>책임관</u>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 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u>제21조제1항</u>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수 있다.

- 제13조(신고의 철회) ① 공익신고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 자가 공익신고를 철회하는 서면이 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담당관은 관리대장에 등 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가 철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 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 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 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 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공 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 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 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 여 관리한다.
  -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 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 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 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 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

- ④ 시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④ (현행과 같음) 처리하는 공무워 외의 자가 제1항 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 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하다.
- ⑤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 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 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 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시 신고담당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 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 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⑤ (현행과 같음)

장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다.

② 시장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 에 대한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 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첨부한다.

-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 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 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 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 위와 이유
-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 는 경우 그 사실
-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④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 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 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 ③ <u>국민권익위원회</u>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u>조사·수</u> 사결과를 통보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 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⑤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 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 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 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 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 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 ⑥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조 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 12조까지를 준용한다.
-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 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담당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다.
- 익신고담당관은 접수된 공익신고 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 다.

- ⑤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 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 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 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 지를 준용한다.
-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 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 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

법령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u>공익신고담당관</u>은 국민권익위 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 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u>제17조(</u>공익신고의 종결) ① <u>공익</u> <u>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u>제15조제1항</u>의 조사 또는 <u>제</u> 16조제1항</u>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 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 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 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 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 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 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 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 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 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 나 이미 끝난 경우
-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 련성이 없는 경우
-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 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 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 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u>제8조부터 제13조</u>까지를 준용한다.
- ③ <u>공익신고담당관</u>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이들보장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u>국민</u> 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 <u>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u>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u>14일</u>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u>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u>

-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u>제11조부터 제17조</u>까지를 준용한다.
-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u>제19조</u>(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u>제23조</u>(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 의무) (현행과 같음)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 니 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하다.
-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 니 된다.
  - ②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 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 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 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 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21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 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 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

-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 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 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 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 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 발할 수 있다.
- 등) ① (현행과 같음)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② (현행과 같음)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 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담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시장은 공 당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 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 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 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감면) ① 시장은 공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현행과 같 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 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 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②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

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 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 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 내하여야 하다.

음)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 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 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 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 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 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 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 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 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 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 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 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 한 경우
  -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 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24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 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 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 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 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 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 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u>공익신고</u>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보장되지 않은 경우

-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신 설>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 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 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2. 국가 또는 시에 수입의 회복이 2. (현행과 같음) 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다.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 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 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 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국가 또는 시에 수입의 회복이 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된 날부터 5년 이내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당해 기관에 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시에 재산 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 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 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 다.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 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 우
-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 선에 기여한 경우
-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 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 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 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 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 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 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 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는 제외한다)

-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 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 다.
- 제2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 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 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 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 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 다.)

- 5.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 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 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 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 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 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 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9조(협조 등의 요청) 공익신고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시장은 신

담당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 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 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 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 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 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 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 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 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
 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
기관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
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